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250 재산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피고, 항소인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215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2.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1)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별지 목록 '처분일' 및 '처분금액'란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2)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2013. 11. 13.자 취득세 13,749,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의 2013. 11. 19.자 취득세 2,610,2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위 각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과 쟁점 일부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2015두46765 판결에 비추어보아도 그 결론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장 래 아

판사 정 한 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6

[별지]

목록

처분청 (피고)	처분일	과세대상	처분금액(원)		정당한 세액(원)	
			재산세	지방 교육세	재산세	지방 교육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2013.7.25.	대구 달서구 대천동 895 건물	50,424,760	6,225,470	46,502,970	5,741,280
	2013.9.6.	대구 달서구 대천동 895 토지	69,246,610	8,146,660	63,860,950	7,513,050

※ 재산세(처분금액, 정당한 세액)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것임.

※ 정당한 세액

○ 계산식: 처분금액 - 경감액(= 처분금액 × 0.75 × 10.37%) = 정당한 세액(10원 미만은 버림)

〈끝〉